



의안번호	제00호
회의 연월일	2026. 3. 9. (제583회 정기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령)

제출부서	경찰청 (기획조정관)
제출연월일	2026. 2. 24.

조직계장,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사 9명), 허위영상물·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위 5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치안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연구위원 직위를 신설하며 연구위원 5명(치안감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경찰서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3명(7급 9명, 8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3명)하며, 시·도경찰청의 정보화 시설·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총경 4명)의 직급을 복수 직종으로 조정(총경 또는 4급 4명)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의 치안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치안정책과는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정보화기반과는 치안인공지능기반과로, 인공지능서비스팀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으로 개편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고, 기동장비 고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직 1명(8급 1명)을 공업 직렬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부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형사기동대의 명칭은 광역범죄

수사대로, 기동순찰대의 명칭은 광역예방순찰대로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체납과태료 관리 인력으로 경찰청 소속기관에 40명(8급 40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증원한 인력 2명(학예연구사 2명)에 대한 직렬 오기 업무 특성에 맞는 연구직 2명(안전연구사 2명)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치안정책과·정보화기반과·장비운영과·인공지능서비스팀”을 “치안인공지능정책과·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비운영과·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치안정책과장”을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으로, “정보화기반과장”을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으로, “인공지능서비스팀장”을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치안정책과장”을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장기”를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 등 중장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 연구개발의”를 “연구개발 기획 및 예산편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발굴·기획 및 실증
4. 국제공동연구의 기획·연구개발·공동실증
5. 치안산업진흥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6.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인증,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 지원 등 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제6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호(중

전의 제8호) 중 “치안분야”를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 치안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기반과장”을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서비스팀장”을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 기술동향·수요 분석”을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6.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관리

제7조제5항제4호 중 “기동순찰대”를 “광역예방순찰대”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형사기동대”를 “광역범죄수사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기동대장”을 “광역범죄수사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제4호 중 “기동순찰대”를 “광역예방순찰대”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형사기동대”를 각각 “광역범죄수사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형사기동대에”를 “광역범죄수사대에”로, “형사기동대로”를 “광역범죄수사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사과·형사과·형사기동대”를 “수사과·형사과·광역범죄수사대”로 한다.

제69조의2의 제목 “(형사기동대)”를 “(광역범죄수사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기동대장”을 각각 “광역범죄수사대장”으로 한

다.

제71조제4호 중 “기동순찰대”를 “광역예방순찰대”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827명”을 “867명”으로, “494명”을 “534명”으로, “학예연구사”를 “안전연구사”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 “196”을 “195”로, 공업서기 “7”을 “8”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서기 “220”을 “219”로, 공업서기 “7”을 “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34,381”을 “134,402”로, 경찰공무원 계 “129,931”을 “129,948”로, 치안감 “18”을 “23”으로, 총경 “625”를 “621”로, 경감 “10,611”을 “10,613”으로, 경위 “17,071”을 “17,076”으로, 경사 “28,559”를 “28,568”로, 일반직 계 “4,356”을 “4,360”으로, 서기관 또는 총경 “3”을 “7”로, 행정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1”을 “44”로, 행정주사보 “368”을 “365”로,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7”을 “36”으로 한다.

별표 7 중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3”을 “68”로, 행정서기 “1,163”을 “1,156”으로, 행정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66”을 “161”로,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40”을 “238”로, 안전연구관 “7”을 “8”로, 전문경력관 가군(경찰대학 연구 담당) “4”를 “3”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208”을 “135,269”로, 경찰공무원 계 “129,931”을 “129,948”로, 치안감 “18”을 “23”으로, 총경 “625”를 “621”로, 경감 “10,611”을 “10,613”으로, 경위 “17,071”을 “17,076”으로, 경사 “28,559”를 “28,568”로, 일반직 계 “5,183”을 “5,227”로, 서기관 또는 총경 “3”을 “7”로, 행정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1”을 “44”로, 행정주사보 “4

58”을 “455”로,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8”을 “37”로 한다.

별표 8 중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0”을 “75”로, 행정서기 “1,636”을 “1,669”로, 행정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66”을 “161”로,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32”를 “230”으로, 안전연구관 “7”을 “8”로, 안전연구사 “7”을 “9”로 하며, “학예연구사 2”를 삭제, 전문경력관 가군(경찰대학 연구 담당) “4”를 “3”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치안정책 연구기능 강화(경찰대학)	5명 (치안감 5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	----------------	-----------------

행정안전부령 제59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8의 정원 316명”을 “별표 8의 정원 356명”으로, “행정서기 161명”을 “행정서기 201명”으로, “학예연구사 2명”을 “안전연구사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생략)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u>미래치안정책과 · 정보화기반과 · 장비운영과 · 인공지능서비스팀</u> 을 둔다.	② ----- <u>치안인공지능정책과 · 치안인공지능기반과 · 장비운영과 ·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u> ----- --.
③ <u>미래치안정책과장</u>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u>정보화기반과장</u> 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u>인공지능서비스팀장</u> 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u>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u> ----- ----- <u>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u> ----- ----- <u>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u> ----- ----- -----.
④ <u>미래치안정책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u> ----- -----.
1. <u>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u> · 종합 및 조정	1. <u>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 등 중장기</u> -----
2. 치안분야 <u>과학기술 연구개발</u> 의 총괄 · 조정	2. ----- <u>연구개발 기획 및 예산편성</u> -----
3. <u>경찰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총괄</u>	3. <u>안전 ·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발굴 · 기획 및 실증</u>
4. <u>치안 관련 국내외 기술 · 장</u>	4. <u>국제공동연구의 기획 · 연구</u>

<u>비 현황 파악 및 연구개발과 제 발굴 · 기획</u>	<u>개발 · 공동실증</u>
<u>5.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 한 시책 수립</u>	<u>5. 치안산업진흥 관련 법령 · 제 도 개선 및 정책 수립</u>
<u>6. 치안산업 육성 지원 및 관련 정책 수립</u>	<u>6.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 · 인증,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 지원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u>
<u>7.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지원</u>	<u><삭 제></u>
<u>8.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 한 정책의 수립 · 시행</u>	<u>7.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 치안분야 ---</u>
<u>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u><삭 제></u>
<u>1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u><삭 제></u>
<u>11.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 협력</u>	<u><삭 제></u>
<u>12.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 · 조정</u>	<u><삭 제></u>
<u>13. (생 략)</u>	<u>8. (현행 제13호와 같음)</u>
<u>⑤ 정보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u>	<u>⑤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 -----.</u>
<u>1. ~ 5. (생 략)</u>	<u>1. ~ 5.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6.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u>

⑥ (생략) ⑦ <u>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3. (생략) 4. <u>치안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술동향·수요 분석</u> 5. (생략) ⑧ <u>데이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 2. <u>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3. <u>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u> <u>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u> <u>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4. <u>치안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u> 5. <u>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u>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 ~ ④ (생략) ⑤ <u>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정보자원관리</u> ⑥ (현행과 같음) ⑦ <u>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u> 1. ~ 3. (현행과 같음) 4. ----- <u>위험 관리</u> <u>및 인공지능 영향평가</u>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동순찰대</u> 운영에 관한 사항	4. <u>광역예방순찰대</u> ----- --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및 <u>형사기동대</u> 를 둔다.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 ----- ----- -- <u>광역범죄수사대</u>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u>형사기동대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u>광역범죄수사대장</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 ③ (생략)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동순찰대</u> 운영·관리	4. <u>광역예방순찰대</u>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치안정보과를 두	제50조(하부조직) ① ----- ----- ----- -----

며, 수사부에 수사과 · 형사과 · 사이버수사과 · 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마약 · 국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 · 여성안전과 · 청소년보호과 및 교통과를 둔다.

②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 · 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 · 정보화장비과 · 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에는 마약 · 국제범죄수사대를 두어 형사기동대에 속하는 사무를 마약 · 국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③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북부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

----- 광역범죄수사대 -----

-----.

② -----

----- 광역범죄수사대 -----

-----.

광역범죄수사대 -----
----- 광역범죄수사대로 -----.

③ -----

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형사과·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④ ~ ⑨ (생략)

제69조의2(형사기동대) 형사기동
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

및 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
단에 두는 형사기동대장의 경우
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
외한다.

1. ~ 3. (생략)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
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
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
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
함하여 분장한다.

1. ~ 3. (생략)

4. 기동순찰대 운영·관리

5. ~ 10. (생략)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
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
의 정원 중 827명(행정사무관 3

----- 광역범죄수사대장-----

-----.

1. ~ 3. (현행과 같음)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광역예방순찰대 ----

5. ~ 10. (현행과 같음)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867명-----

명,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u>494명</u>, 공업서기 1명,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u>학예연구사</u>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 ----- ----- --- <u>534명</u>----- ----- ----- ----- ----- ---- <u>안전연구사</u>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	·		·	·	-1
	·		·	·	
			<u>196</u>	<u>195</u>	
공업서기	·		·	·	+1
	·		·	·	
			<u>7</u>	<u>8</u>	
	·		·	·	
	·		·	·	

[별표 6]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	•	•	•	-1
	•	•	•	
		<u>220</u>	<u>219</u>	
공업서기	•	•	•	+1
	•	•	•	
		<u>7</u>	<u>8</u>	
	•	•	•	
	•	•	•	

[별표 7]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4,381</u>	<u>134,402</u>	+21
경찰공무원 계	<u>129,931</u>	<u>129,948</u>	+17
•	•	•	
치안감	<u>18</u>	<u>23</u>	+5
•	•	•	
총 경	<u>625</u>	<u>621</u>	-4
•	•	•	
경 감	<u>10,611</u>	<u>10,613</u>	+2
경 위	<u>17,071</u>	<u>17,076</u>	+5
경 사	<u>28,559</u>	<u>28,568</u>	+9
•	•	•	
•	•	•	
일반직 계	<u>4,356</u>	<u>4,360</u>	+4
•	•	•	
•	•	•	
서기관 또는 총경	<u>3</u>	<u>7</u>	+4
•	•	•	
•	•	•	

행정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21</u>	<u>44</u>	+23
·	·	·	
·	·	·	
행정주사보	<u>368</u>	<u>365</u>	-3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37</u>	<u>36</u>	-1
·	·	·	
·	·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73</u>	<u>68</u>	-5
·	·	·	
·	·	·	
행정서기	<u>1,163</u>	<u>1,156</u>	-7
행정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166</u>	<u>161</u>	-5
·	·	·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40</u>	<u>238</u>	-2

•	•	•	
•	•	•	
안전연구관	<u>7</u>	<u>8</u>	+1
•	•	•	
•	•	•	
전문경력관 가군(경찰대학 연구 담당)	<u>4</u>	<u>3</u>	-1
•	•	•	
•	•	•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35,208	135,269	+61
경찰공무원 계	129,931	129,948	+17
치안감	18	23	+5
총경	625	621	-4
경감	10,611	10,613	+2
경위	17,071	17,076	+5
경사	28,559	28,568	+9
일반직 계	5,183	5,227	+44
서기관 또는 총경	3	7	+4

행정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21</u>	<u>44</u>	+23
·	·	·	
·	·	·	
행정주사보	<u>458</u>	<u>455</u>	-3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38</u>	<u>37</u>	-1
·	·	·	
·	·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0</u>	<u>75</u>	-5
·	·	·	
·	·	·	
행정서기	<u>1,636</u>	<u>1,669</u>	+33
행정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166</u>	<u>161</u>	-5
·	·	·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32</u>	<u>230</u>	-2

•	•	•	
•	•	•	
안전연구관	<u>7</u>	<u>8</u>	+1
•	•	•	
•	•	•	
안전연구사	<u>7</u>	<u>9</u>	+2
<u>학예연구사</u>	<u>2</u>	<u><삭 제></u>	-2
•	•	•	
•	•	•	
전문경력관 가군(경찰대학 연구 담당)	<u>4</u>	<u>3</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157